
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지원전략(시안)

2024. 11.

교 육 부
[인재정책실]

목 차

I. RISE 지원전략(시안) 개요	1
II. RISE 비전과 목표	4
III. RISE 지원전략(시안) 주요 내용	5
1) 추진체계	5
2) 계획 수립	13
3) 사업 운영	19
4) 성과관리	27
IV. 향후 추진일정(안)	31

I. RISE 지원전략(시안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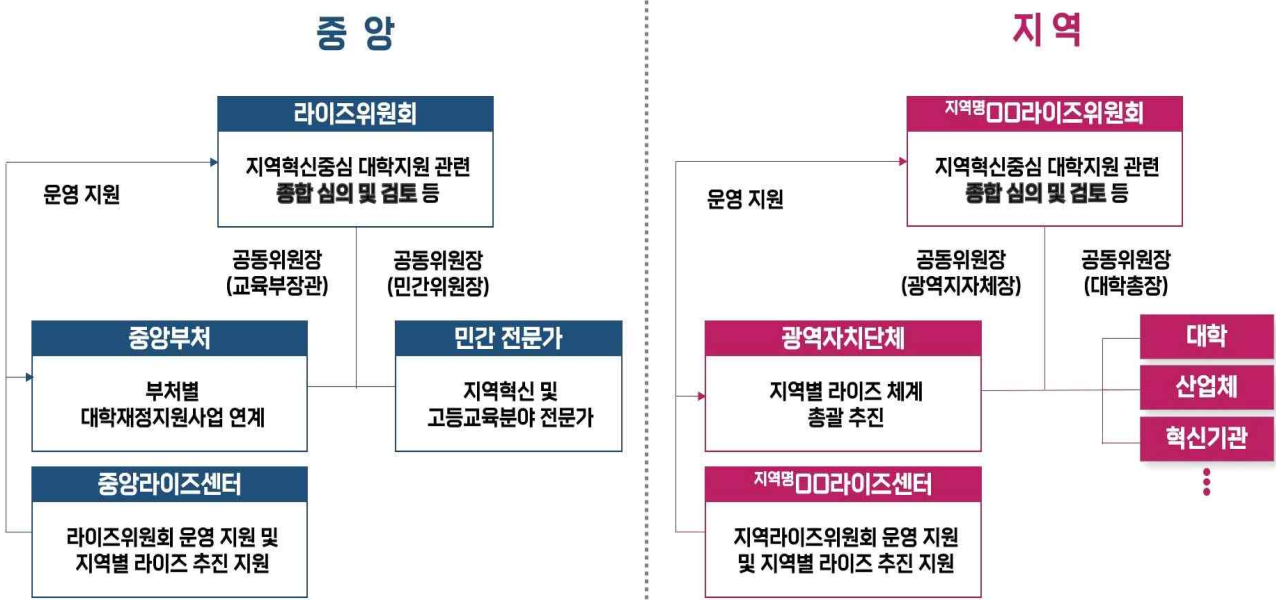
□ 구성

- ①중앙 및 지역 단위 RISE 추진체계, ②지역별 RISE 계획 수립, ③사업 운영 방식, ④성과관리 체계의 4개 영역으로 구성

□ 추진체계 구축·운영 지원전략

- (지역) 지역RISE위원회*를 중심으로, 시도(지역RISE센터)·대학·산업계·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·운영
 - ※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및 「RISE훈령」 제정으로 지자체장-지역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체제, 지역대학 총장·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마련
- 지역RISE위원회는 지역의 RISE 기본계획, 사업 수행 대상 선정 평가결과, 성과관리 등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- (중앙) 교육부 포함 중앙부처·지방시대추진·대교협·전문대교협 등 지역·대학 지원기관들의 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·운영

< 참고 : 중앙-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>



- (협력체계) △지역 주도 사업 기획·설계 △지역라이즈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△지역 주체 간 수평적인 협의 체계 구축·운영 등에 중점

□ 계획 수립 지원전략

- (종류) 수립주체별로 지역이 수립하는 ①RISE 기본계획(5개년), ②연도별 시행계획과, 교육부 수립 RISE 지원전략(5개년)으로 구분
 - ①기본계획은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
 -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'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활용 ※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
- (강조점) 각 시도는 대학과 협력적·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전략,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
 - '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 생태계'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, 교육부 포함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
 - 의대 교육혁신 지원,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계획 및 '25년 일몰되는 사업들의 지역 협업방안을 각 지역별 계획에 반영

□ 사업운영 지원전략

- (운영주체)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
 - ※ 각 지역대학, 기업,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
- (사업기간) 2025년 3월 ~ 2030년 2월 (5년)
- (지원대상) ¹⁾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*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
 - * 단,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
 - ²⁾재정진단 등 기준 미적용 대상(폴리텍·대학원대학, 출연연 등) 또는 재정진단 등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, ¹⁾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및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
 - ³⁾기업 등의 경우에도 ¹⁾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,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
- (지원범위)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
 - ※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
- (예산 지원)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

□ **성과관리 체계 구축 · 운영 지원전략**

- **(성과관리 목적)** RISE 사업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,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**중앙-지역 간 협력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**
- **(추진 방향)** 지역 · 대학의 동반성장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**핵심성과지표**를 제시하고, 지역은 **자율성과지표**를 지역 주도로 수립하여 중앙 및 지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**체계적인 대학지원** 추진
- **(성과관리 구조)** 지역 주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**지자체의 자체평가(지자체→대학, 매년 실시)**를 기본으로 하며,
 - 지역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**매년 평가**를 통해 **단위과제별 목표와, 프로젝트별 목표의 달성도를 자체 점검하고 환류** 실시
 - 교육부는 **연차점검**을 통해 지역별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, **중간(2년차) 및 종합평가(5년차)**를 통해 지역별 **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예산배분 및 컨설팅** 실시
- **(성과지표 구성)** 지역은 성과관리를 위한 **자율성과지표**를 설정
 - 교육부는 지역별 RISE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**공통지표**로서 **핵심성과지표**를 제시하되, **중간·종합평가**에서만 평가

※ ④~⑥ 핵심성과지표는 종합평가시에만 활용

핵심성과지표 구성(안)
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
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
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
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
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
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(IMPACT 평가)

II. RISE 비전과 목표

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

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핵심 인적·물적자원 집약체인 대학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·발전을 이끄는 체계

비전

지역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 **지역발전 생태계 구축**

목표

“대학이 살리는 지역”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+ “지역이 키우는 대학” 경쟁력있는 지역대학 육성

주요 내용

① RISE 추진체계

- ▶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및 자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
- ▶ 중앙은 RISE를 플랫폼으로 한 범부처 협업체계 조성

② RISE 계획 수립

- ▶ 지역발전전략 연계, 대학 강점·특성화분야 적극 활용
- ▶ 범부처 연계, 중앙·지역 협업, 초광역 과제

③ 사업운영 방식

- ▶ 지자체 20%+α 매칭
- ▶ 칸막이 없는 대학 예산 집행

④ 성과관리 체계

- ▶ 지역별 자체평가 중심 성과관리
- ▶ 교육부는 공통 핵심성과지표 관리

정책 기반

지원중심으로 교육부 역할 대전환

- 규제개혁**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편
- 재정개혁** 혁신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대학 지원
- 구조개혁** 지역 사회를 위한 대학 역할 전환 지원

범정부적 지역주도 정책 강화

- 지역소멸 방지,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본격화
- ※ 일자리, 지역재생, 문화, 산업, R&D 등 전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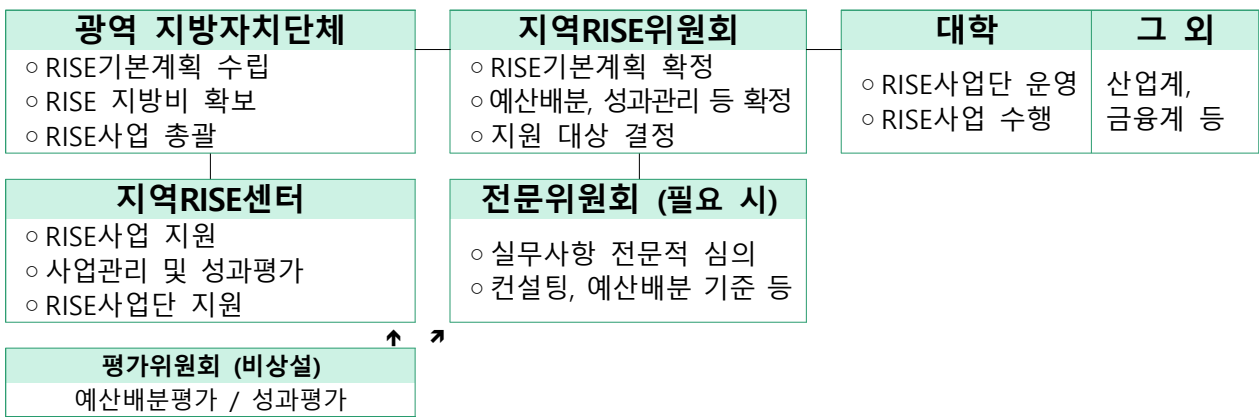
Ⅲ. RISE 지원전략(시안) 주요 내용

1 추진 체계

※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(훈령)」(안) 기반

1 지역 및 대학의 추진체계

◆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, 지자체·지역RISE센터·대학·산업계·교육청 등 지역혁신을 이끄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·운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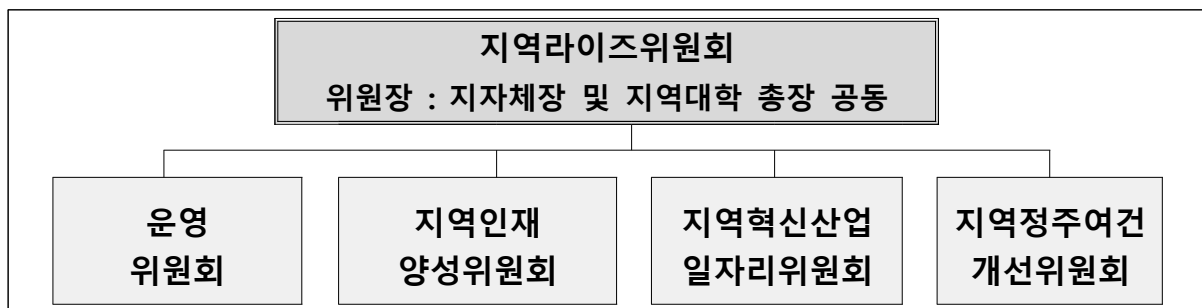
○ (지역RISE위원회) 지역의 RISE 추진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

※ 각 지역은 훈령 제정 및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전이라도 지역라이즈위원회 조속 구성

- <구성> 지자체·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, 지자체장과 지역(전문)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, 교육계 위원을 1/2이상 위촉
- <기능> 지역의 RISE 기본계획, 사업 수행 대상 선정평가 결과, 성과 관리 등 지역 내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
※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사항의 실무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 운영 가능

<지역RISE위원회 구성 예시>



- **(지자체)** 지자체 내 분산되어 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통합·재배치하여 RISE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운영
 - 시도별 조직·정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·운영하되, 총괄 부서는 최소 과 단위 이상 및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총괄부서와 동일한 실·국으로 편제*할 것을 권장
 - * 예를 들어, 산업부 사업을 시도에서 RISE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와 RISE전담부서 간의 정보공유, 성과지표 공유 필요
 - RISE 계획 이행을 위한 총괄담당자(팀)를 지정하며, 산학협력, 인재 양성, 평생교육 등 시·도 대학지원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로 배정
 - ※ 필요 시 담당자를 전담관 또는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업무 수행 지원
 - 교육개혁지원관 배치 시도는, RISE 추진 관련 자문, 시도-교육부 간 소통, 시도-대학 간 소통 등에 지원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
 - ※ '25년 전국시행에 맞춰, 교육개혁지원관의 전 지역 배치 추진 검토(현재 7개 시범지역)
- **(지역RISE센터)** 지역 대학 및 산업체, 기업과의 협력·지원사업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또는 신설한 비영리법인
 - ※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·소통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과 RISE 계획을 연계하고, 대학 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
 - 지역의 RISE 계획 수립 지원, 대학의 RISE 사업 수행 관리, 사업비 집행·정산, 성과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

<지역RISE센터 조직 구성 예시>



- ※ 필요 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통한 사업관리 협업 가능
- 지역 내 지역·대학혁신 관련 지원조직(지역상의·(전문)대교협·평생교육원·지역인적자원위 등)과 협의체 운영 시 적극 참여·연계 권장

- (대학) 총장의 리더십 하에 비전·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RISE 추진
 - 대학 내에서의 분절적 사업운영 방지를 위해, 학교가 수주하는 단위과제 수와 무관하게 1교당 1개의 RISE 사업단*을 구성
 - * 예) 사업단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학 본부에 두고, 교무위원이 사업단장 겸임
 - ※ 글로벌대학의 경우, 글로벌대학사업단장과 RISE사업단장은 동일인으로 하여, RISE 체계 내에서 지역-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의 의미 부각

2 중앙 단위 추진체계

◆ 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포함 중앙부처·중앙라이즈센터·지방시대委·대교협·전문대교협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RISE 추진 조정·지원

- (RISE위원회) 중앙단위 RISE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
 - <구성>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육계·산업계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기재부·과기정통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,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 구조
 - <기능> RISE 지원전략, 규제 개선, 성과관리, 예산배분, 컨설팅 등 전국에 적용될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 - ※ 라이즈위원회 심의사항의 실무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 운영 가능
- (중앙RISE센터) RISE의 전 지역 안착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중앙단위 각종 성과관리·모니터링·조사·연구·데이터관리 등을 수행
 - <지역지원> 지자체 및 지역RISE센터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·가이드라인 제공, 워크숍, 지역별(권역별) 전담인력 배치 등 추진
 - <중앙단위> 교육부의 지자체 대상 성과평가 위탁 운영, 전국 단위 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, RISE EXPO 등 성과확산
- (중앙부처) 지역·대학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RISE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정책 연계 지원

<참고 : RISE를 통한 범부처 협업 사례>

<범부처 사업의 RISE 연계 유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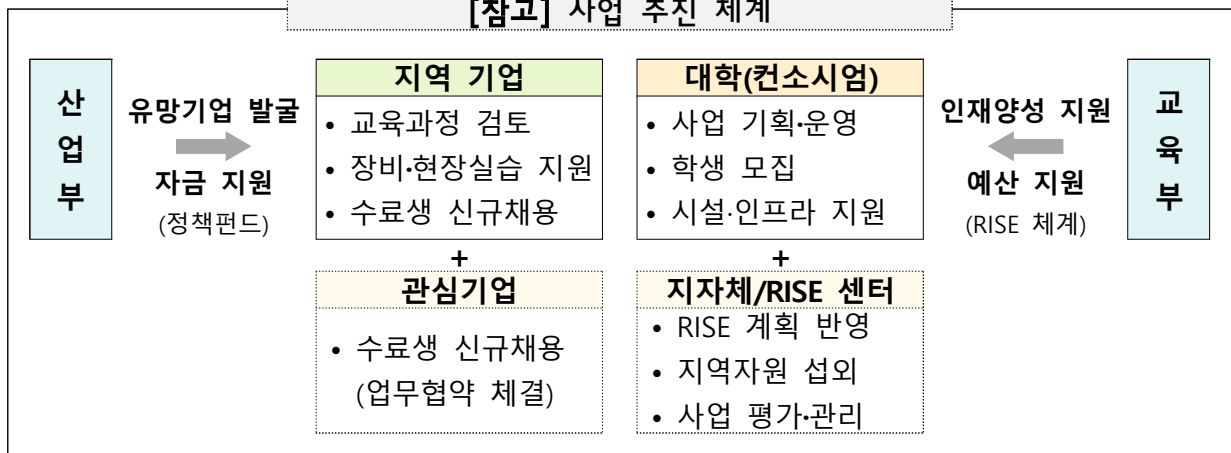
- ①유형 : 각 지역은 '범부처 정책메뉴판'에서 제시한 부처별 사업 중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활용하여, RISE 계획의 단위과제를 기획
 - ②유형 : 1유형+지역RISE센터에서 범부처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협업
 - ③유형 : 2유형 + 범부처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 전환 및 지역자율 집행
- ※ 중앙부처 인재양성사업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계적 이관 협의

① **산업+교육** 지역산업활력펀드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(CUBE*) : 연계 1유형

* Customized, University-Based Education and Training

- ▶ (필요성) 자금 및 인력수급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재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
- ▶ (내용) 산업부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드(1,100억)를 공급하고, 대학은 기업과 협의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
 -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고, 기업의 연구설비와 전문인력도 교육에 활용해, 수료 이후 즉시 채용가능한 현장 중심 인력양성
- ▶ (추진체계) 지자체(지역RISE센터)가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한 RISE 계획 과제를 기획하고, 추진 의사가 있는 대학-기업 컨소시엄 선정·성과관리 등 진행

[참고] 사업 추진 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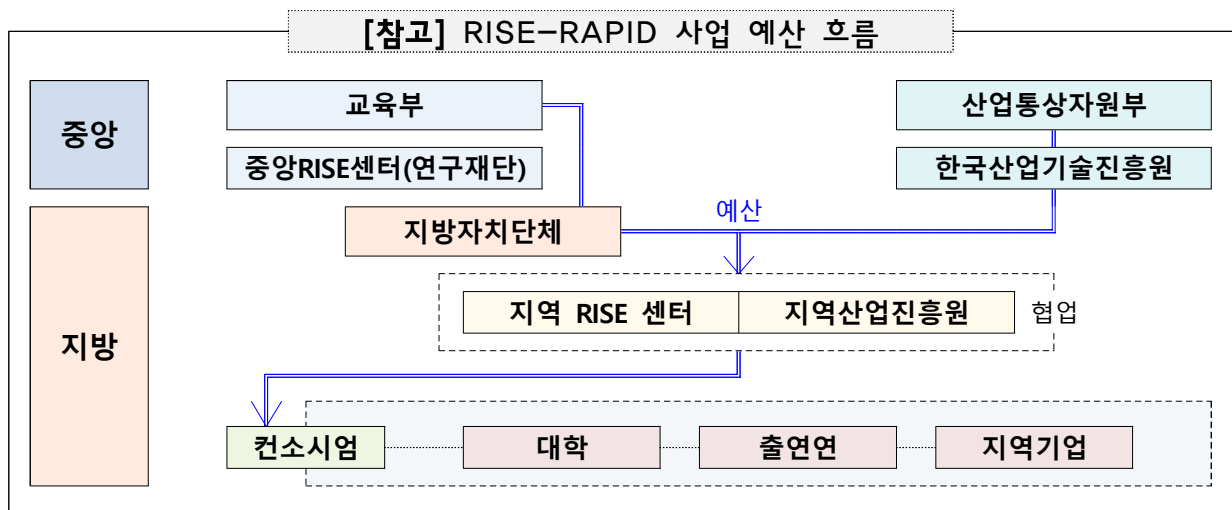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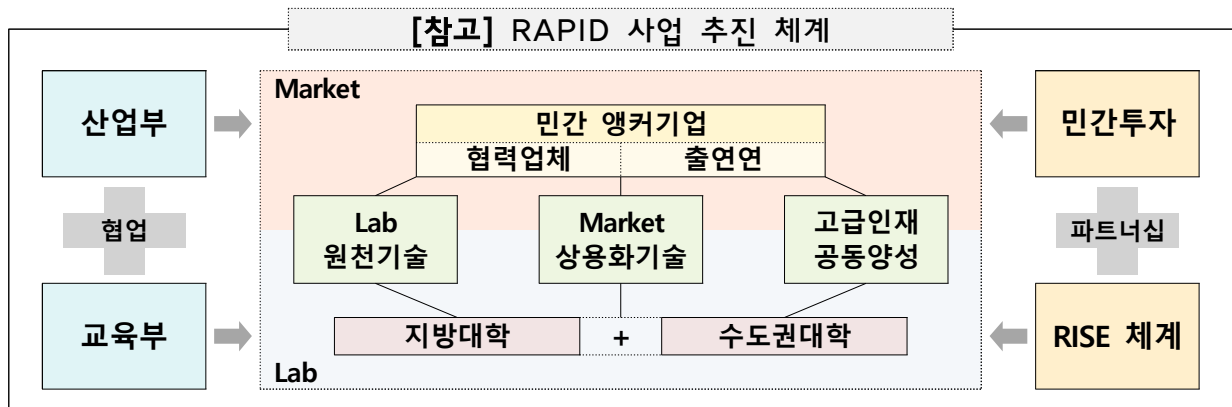
② **산업+교육** 지역앵커기업-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(RAPID*) : 연계 2유형**

* Regional Ancorcompany-Academy Partnership Innovation Development

**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공동 관리(예산집행체계 연계 추진)

- ▶ (필요성)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, 지역의 혁신주체인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및 대학-지역기업 간 공동 R&D를 증진할 필요
- ▶ (내용)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 수요를 발굴
 - 지역 대학·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중대형 기술개발(예: 항공기 관련 중소형 엔진)을 추진

▶ (추진체계) 대학·기업이 참여하는 완제품(시스템) 단위 R&D를 RISE 체계 내 수행



③ **과기+교육** 학연 플랫폼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벽허물기 : 연계 2유형

- ▶ (필요성) 지역 대학과 출연연은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이나, 자발적 협력 유인이 부족하여 학·연 공동 시너지 창출 저조
- ▶ (내용) 지역대학과 출연연 주도로 지속가능한 학·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,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지원
 - 권역별 학·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이 중점 지역혁신 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 인력양성, 신기술 육성,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
 - ‘대학-출연연 간 벽허물기’를 통해 개방형 인력교류 등 대학과 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 확대, 학·연협력플랫폼의 RISE 연계 등 협업 강화 추진
 - 대학·출연연 등 혁신 주체가 협력하여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국가 연구소(NRL 2.0)로 육성
- ▶ (추진체계) 지자체(지역RISE센터)와 협력하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의 RISE 연계를 추진하고, 대학-출연연 벽허물기, NRL2.0등 부처간 협업 강화 추진

4 중기+교육 지역주력산업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연계 : 연계 1유형

▶ (필요성) 레전드 50+의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*(자금, 제조혁신, 판로 등)과 RISE의 인력양성 체계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부터 기업성장까지 연계 지원

※ 레전드(Region+end) 50+ 프로젝트 : 여러 기업지원 수단(7개 사업)을 연계한 프로젝트 하나로 지역기업 지원을 끝내어, 우리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을 50% 이상 달성하도록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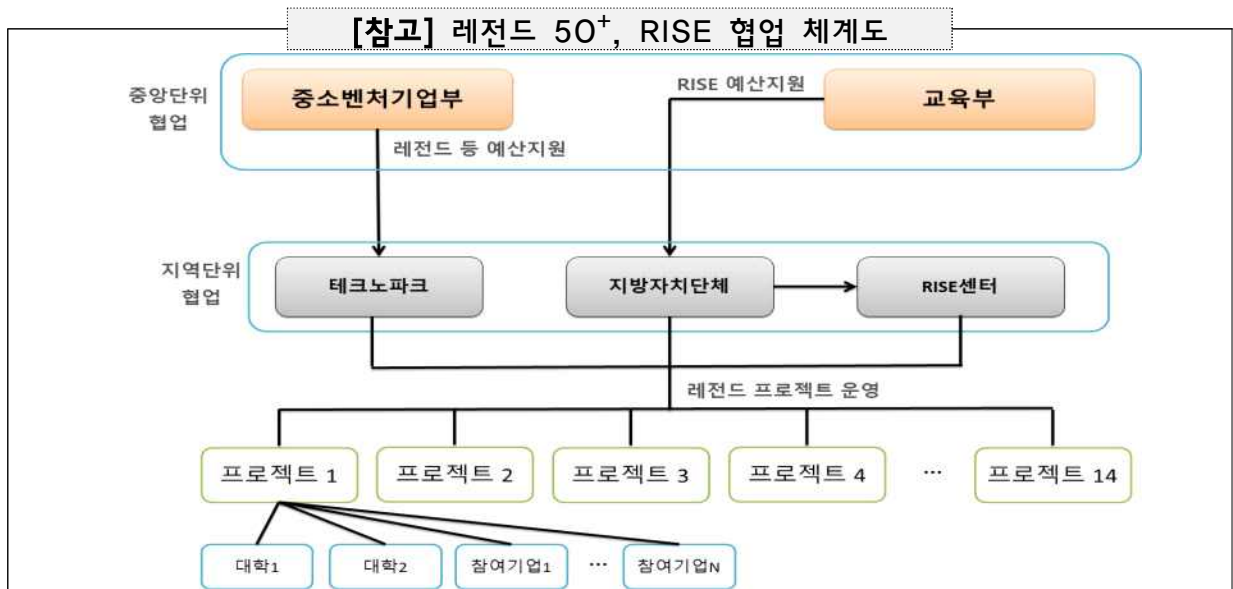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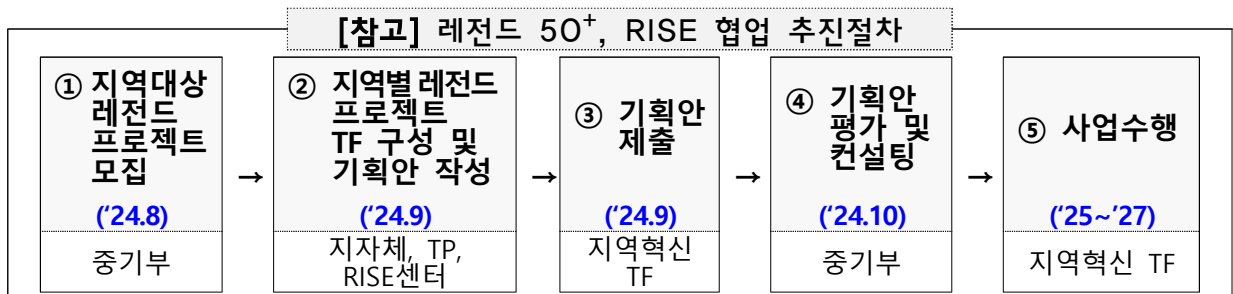
<레전드 50+ 연계 사업 분류 및 '24년 예산 (단위 : 원)>

분야	사업명	'24 예산	분야	사업명	'24 예산
건설팅	중소기업혁신바우처	140억	사업화	수출바우처	100억
창업·성장	창업중심대학	100억		지역주력산업기업지원	110억
제조혁신	스마트공장	330억		지역혁신생태계조성	10억
정책자금	중진기금 정책자금	2,000억	계		2,790억

▶ (내용)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추진

- [중기부] 레전드 50+ 2.0 사업에 지자체별 TP-RISE센터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, 지자체에서 레전드 프로젝트 기획시 인재양성+기업지원을 반드시 연계하여 제안
- [교육부] 중기부에서 발굴한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RISE체계내에서 운영하도록 RISE센터와 TP간 협의체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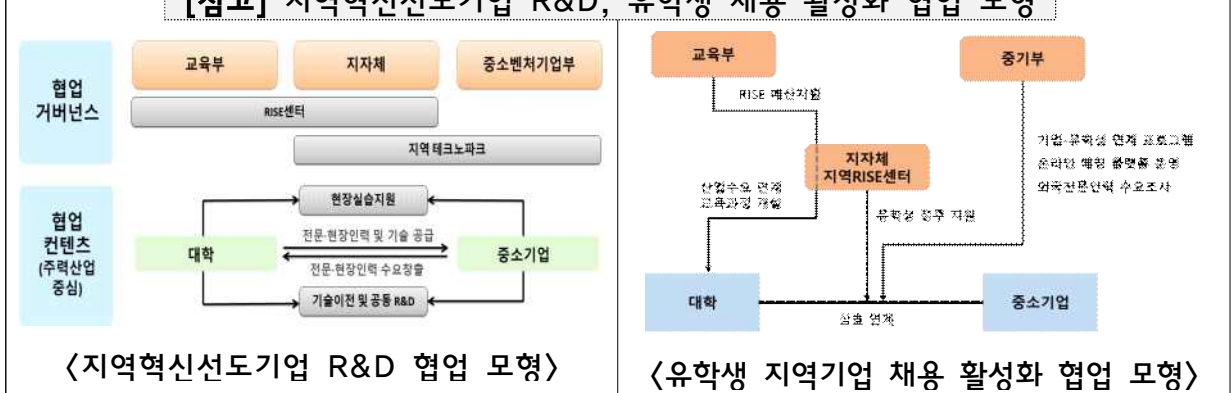
▶ (추진체계) 중기+교육부 공동 총괄하에 지역 주도의 '레전드 50+ 2.0 프로젝트' 수립·실행



5 [중기+교육] 지역혁신선도기업 R&D 협업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벗어나, RISE 체계와 협업하여 지·산·학·연 협력생태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
 - * 그간 R&D는 개별 기업 위주로 운영되어, 지역-중소기업 대상 R&D는 동 사업이 유일
- ▶ (내용)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대학, 대·중견기업,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R&D를 수행하는 '지역혁신선도기업 R&D' 신설('25~)
 - * 사업 유형 : ① 컨소시엄형(지자체+중소기업+대학, RISE 연계) ② 일반기업형(단일 기업 단위)
- [중기부] 컨소시엄형 과제 기획시 대학 참여가 필수이며, RISE 참여 대학 등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이전·공동 R&D, 현장실습 등 수행
- [교육부] RISE 참여 대학이 관내 선도기업과 공동 R&D를 수행할 수 있도록, RISE센터 등이 지역 과제 공모시 관련 내용을 포함
- ▶ (추진체계) 지역별 (地)지자체-(産)중소기업-(學)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, '대학發 혁신'과 '선도중소기업發 혁신' 간 시너지 창출

[참고] 지역혁신선도기업 R&D, 유학생 채용 활성화 협업 모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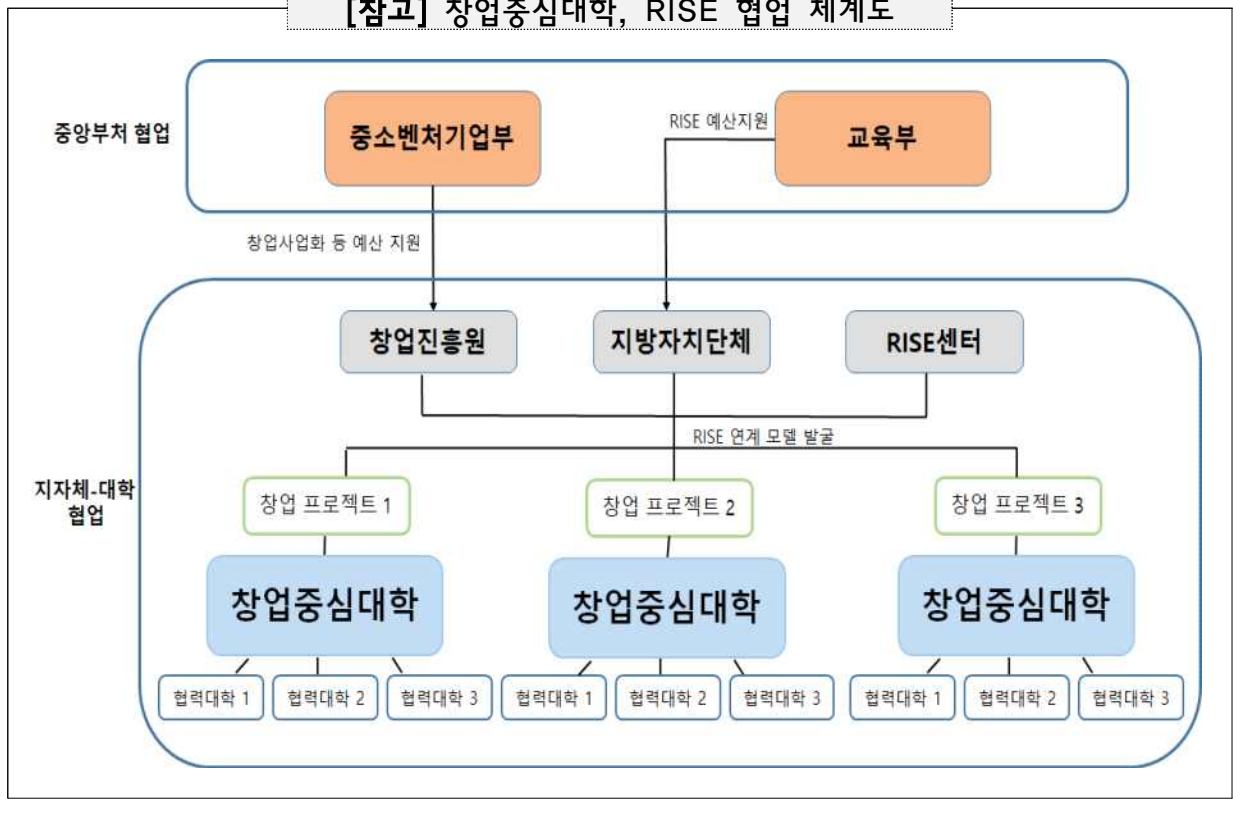
6 [중기+교육]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 활성화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수요와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는 증가하나, 구인·구직 정보 부족, 수요·공급 미스매칭 등이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걸림돌
- ▶ (내용) 대학에서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인·구직 매칭, 유학생의 역량 강화 등을 RISE 중심의 협업 과제로 추진
 - [중기부] 유학생 온라인 매칭 플랫폼 개설('24.하),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-유학생 연계 프로그램 신설('25.), 수요기반 외국인 유치활동 지원
 - [교육부] 지역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정을 계약학과·주문식교육과정 등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기업과 취업 연계성 강화
- ▶ (추진체계) 교육부-중기부-지역 연계를 통해 기업-대학 간 유학생 인력의 수요-공급 매칭,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, 정주여건 마련 등 종합적인 연계 지원

7] 중기+교육 지역대학 중심 창업지원 : 연계 1유형

- ▶ (필요성) 대학은 기술·인력·장비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혁신 주체이나, 대학의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의 역할 미흡
- ▶ (내용) 교육부·중기부의 창업지원 연계를 통해 대학 중심 창업지원 추진체계 마련
 - 지자체(지역 RISE센터)를 중심으로 중기부·교육부가 지자체별 상황, 대학의 강점 등을 고려한 RISE 연계 모델 발굴 지원
 - 교육부 대학 내 창업지원(창업친화적 학사제도, 창업교육 등)과 중기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(사업화 자금, 기술개발, 인력 등)을 연계한 창업지원체계 마련
 - [중기부] 창업중심대학에 지역별 RISE 연계 프로그램 도입하여 지역 내 타 대학의 RISE 과제와 중심대의 창업지원*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
 - * 사업화 지원(자금, 역량 강화), 투자유치 지원, 창업 경진대회, 실험실 창업 지원, 네트워킹 등
 - [교육부] 지자체(지역 RISE 센터)에서 프로젝트 기획 시 지자체별 상황, 대학의 강점을 고려하여 대학창업 활성화, 지역 스타트업 육성 관련 창업중심대학 연계 과제 포함
- ▶ (추진체계) 중기부-교육부-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등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창업지원 모델 마련 추진

[참고] 창업중심대학, RISE 협업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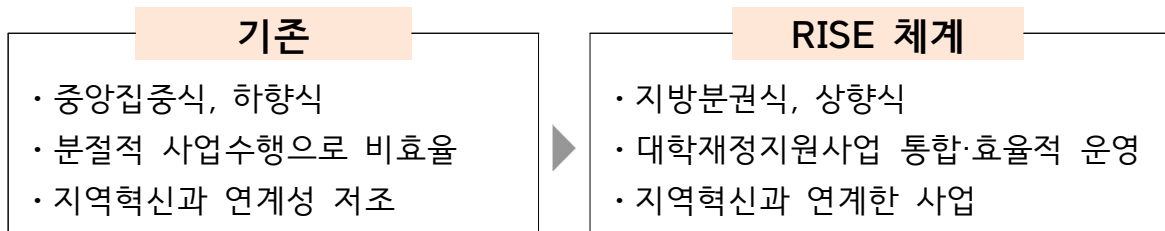


2

계획 수립

1 지역별 계획의 종류

- 각 지역별 RISE 관련 계획은 ①RISE 기본계획(5개년), ②연도별 시행계획(세부시행계획 포함)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
- ①RISE 기본계획은 지역발전전략, 지역 대학의 강점·특성화 분야, 지역의 정책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수립
 - ※ 동 계획은 RISE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, 모니터링,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
 -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의 혁신을 연계한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제안서
-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'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활용 ※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



2 강조점

- (원칙) 각 시도는 대학과의 협력적·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
 - 종전 중앙집중식·하향식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의 상황·발전전략·정책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한 과제 마련
 - 각 지역의 국·공·사립, 일반대·전문대 등 설립 유형과 대학의 강점·특성화 분야, 대학의 규모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
 - 중·장기 계획의 취지를 고려, 계획의 중간 변경은 신중해야 하나 환경 변화 등 발생 시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
 - ※ 각 시도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

- (범부처 등 연계) '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 생태계'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삼아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
 -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책무성 범위 확대
 - ※ RISE 지방비 의무매칭(국비 대비 20%) 산정 시 기초자치단체(시군구) 매칭비 포함
- (중앙·지역 협업) ①글로벌대학, ②의대 교육혁신, ③늘봄 프로그램 개발, ④산학연협력 분야 '25년 RISE 이관사업(8개) 관련 사항 반영
 - 동 사항들의 추진에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발전전략, 전국적 동시 시행 필요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여 RISE 체계에서 수행

<중앙·지역 협업영역 과제 관련 주요 사항>

구분	주요 사항
글로벌대학	▶ 지역 내에서 혁신을 이끄는 우수모델 제시 및 전파
의대	▶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선발, 교육과정 개선 등
늘봄	▶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, 강사 연수 등
8개 이관사업	▶ 지산학연 협력 분야 사업들로 '25년 이행기를 거쳐 '26년 통합 예정

※ 의대 교육혁신지원, 늘봄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항은 기본계획 별도 안내

- ①각 지역별 라이즈 체계에서 글로벌대학의 혁신 전파 역할·방향,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상 시·도의 지원사항 등을 서술
- ②의대 교육혁신지원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 마련
 - 계획 우수성,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인센티브 부여
- ③지역 협력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지자체와 대학·교육청 간 협력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·공급 등 진행
 -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의 질 제고 및 지역 간 편차 감소를 위해 전 시도의 계획에 반영을 권장하고,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 제공
- ④'25년은 사업체계에 지역RISE센터를 포함하고, 지역RISE센터는 각 지역별 예산집행·성과관리 수행, 중앙RISE센터는 중앙단위의 예산집행·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총괄 → '26년 RISE 완전 통합

※ 사업수행 관련 세부사항은 8개 사업별 '25년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

< 8개 내역사업의 RISE 시행 이후 사업체계(안) >

'25년 사업 체계	'26년~
<p>▶ 재원 형태 : 출연금</p> <p>▶ 사업 관리 체계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/div> <p>- 예산은 전담기관 및 지역RISE센터를 거쳐 지역 내 사업참여대학으로 교부</p>	<p>▶ 재원 형태 :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</p> <p>▶ 사업 관리 체계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/div> <p>- 중앙RISE센터에서 사업 지원기능 수행 - 예산 집행 시 기존 전담기관 미경유</p>
<p>▶ 공통적용사항 :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에 통합추진사업의 주요 내용* 명시</p> <p>* 지역별 지원대학, 사업 기간, 예산 규모, 사업 내용 등</p>	

< 지역 RISE 계획 수정방향>

<현행 목차>	<변경 목차(안)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현황 및 진단 2. RISE 비전 및 목표 3. 프로젝트 세부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이 자율로 구성하는 사업계획 4. 재정투자 계획 5. 성과관리 계획 	<p>I 장. 가치 지역자율영역 (좌동)</p> <p>II 장. 가치 중앙·지역 협업영역(신설)</p> <p>-예①) '글로벌대학'의 지역 내 혁신 전파 방향, 시도의 글로벌대학 지원사항 등</p> <p>-예②) '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' 사업의 지역 내 참여 대학, 해당 대학의 수행 내용, 지원 예산 등 명시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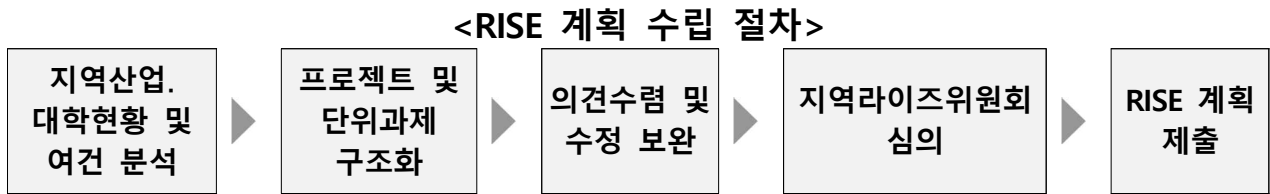
- **(초광역)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필요 시 타 지역 대학·기업·혁신기관 등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초광역 과제 수립 가능
- **(기존 사업 통합 방향)** RISE로 통합되는 5대 재정지원사업(RIS, LINC, HiVE, LiFE, 지방대학활성화)은 원칙적으로 폐지 및 재설계되나,
 -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의 학위 취득 등 지속 지원필요가 큰 사업 내용의 경우, 지역별 RISE 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

예시

- 운영 예정기간이 1년 남아있던 RIS 초광역플랫폼 A의 공유대학 사업은 RISE 체계에서도 최소 1년은 유지하고,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연장 가능

※ 기 안내된 통합사업 외 향후 RISE 추가 통합사업이 있는 경우 RISE계획 변경 가능

③ 계획 수립 절차



① 지역산업 · 대학현황 및 여건 분석

- 지역발전전략 검토, 지역산업 및 지역주민 등의 실수요 조사·분석
 - ※ 지역주력산업 및 미래핵심 산업, 기업 필요 인력, 역량 등 종합분석 검토 필요
 - 기존 재정지원사업(RIS, LINC, HiVE, LiFE,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)을 통해 구축한 지역 내 대학의 강점 및 특성화 사항을 분석
 - ※ 대학으로부터 자료 제출, RISE센터 등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
 - 타 지역 및 타부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조사

②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구조화

- RISE 추진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를 구조화하고, 시도별 RISE 계획 초안을 마련
 - ※ 기획단계부터 지역대학, 지역기업 의견수렴으로 수평적 관계 유지

③ 의견수렴 및 수정 보완

- 시도 RISE 계획 초안에 대해 지역의 대학,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, 전문가 컨설팅 추진을 통해 시도 RISE 계획 수정 보완

④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·의결

- 지역라이즈위원회*를 통한 RISE 계획 심의 및 조정
 - *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, 「고등교육법」 제·개정 전이라도 각 지역은 동 규정(안)에 따른 지역라이즈위원회 조기 구성 권고

⑤ 지역 RISE 계획 제출

-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시도 RISE계획 제출

④ 프로젝트 및 과제 구성

-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ISE 기본계획의 비전·목표들이 모여 RISE의 전체적인 성과목표와 비전을 구성

< 4대 성과목표(예시) >

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	② 지·산·학·연 협력 생태계 구축
③ 직업·평생교육의 혁신	④ 지역현안 해결

- 각 지역은 '지역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 지역발전 생태계'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(4개 내외) 및 프로젝트별 단위과제를 주도적으로 구성

※ 프로젝트 명칭·개수, 프로젝트 내 단위과제 개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

< 시도별 RISE 계획 수립(예시) >



<참고 : RISE 체계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참여방안>

① 전문대학의 특성

- 전문대학은 고유의 목적과 강점을 가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기능
- 단기 학제, 취업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대학의 보유 특성은 지역 특화 정주형·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 가능

② RISE 성과목표별 전문대의 역할

RISE 성과목표(예시)	전문대의 역할
지역정주형 인재양성	▶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해 지역 내 중소·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
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	▶ '지역사회-전문대·일반대-산업체·연구소' 등 지역 내 지산학연 주체들의 협력을 위한 가교기관
직업·평생교육 혁신	▶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설 교육기관·학원 등과는 차별화되는 평생·직업교육 시행
지역현안 해결	▶ 생활밀착형 지역현안문제의 지속 발굴과 해결 프로그램 운영

○ 지역정주형 인재양성

- 지역특화산업 분야 현장미러형 실습환경 구축 및 실습 시행을 통해,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요에 맞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
- ※ 전문대졸 인력은 지역산업 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의 약 72% 차지(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, '23.)

○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

- 전문대는 기초·생산기술 분야의 연구·개발, 숙련자 육성에 특화되어 일반대·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원천기술 개발 및 지역 중소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버팀목 역할 수행

○ 직업·평생교육 혁신

- 지역 산업체 현장을 경험한 교원이 전공 실습 교육시설을 활용해 사설 교육기관, 학원 등과는 차별화되는 전문 직업교육 수행

○ 지역현안 해결

- 뿌리산업, 생활형 특화직업 등 관련 학과를 보유한 전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기 취업 및 정주안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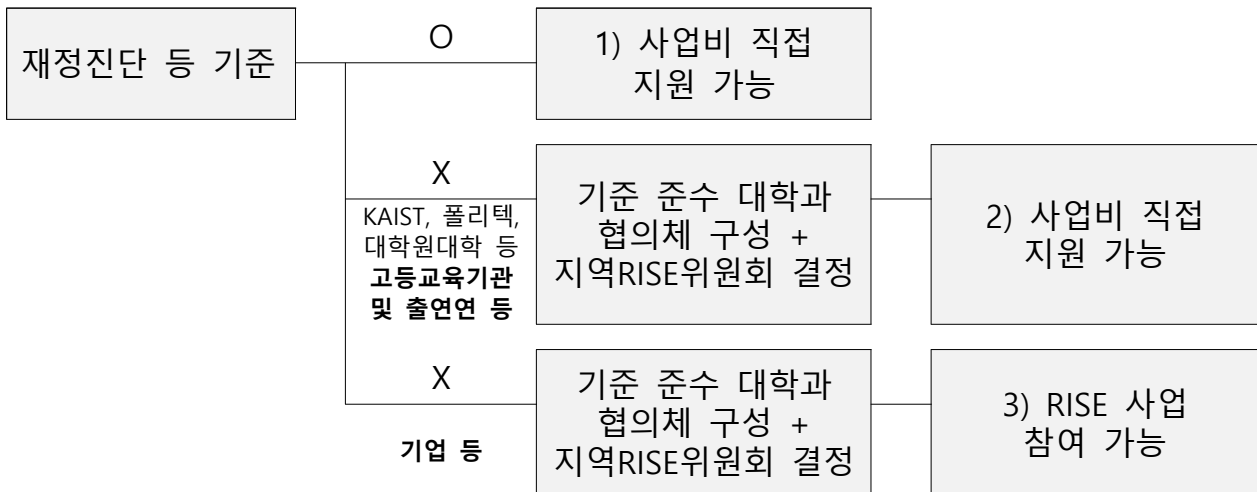
3

사업 운영

1 개요

- (운영주체)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
 - ※ 각 지역대학, 기업,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
- (사업기간) 2025년 3월 ~ 2030년 2월 (5년)
 - ※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지역별 대학 선정·공모는 사전에 수행 가능
- (지원대상) ¹⁾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*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
 - * 단,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

<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(안)」 별표 1 지원대상의 범위 >



- ²⁾재정진단 등 기준 미적용 대상(폴리텍·대학원대학, 출연연 등) 또는 재정진단 등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, ¹⁾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및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

예시

-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상 기능대학(폴리텍)이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,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지원 대상으로 심의·의결을 받은 경우 RISE 사업비(국비+지방비) 지원 가능

- ³⁾기업 등의 경우에도 ¹⁾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,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

○ (지원범위)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

- 대학 본교와 캠퍼스가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할 경우, 캠퍼스 소재지 시도가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, 본교 소재지 시도 또한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

※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

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가 대학 본교”는 “A시”에 소재하고, “가 대학 캠퍼스”는 “B도”에 소재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B도”에서 “가 대학 B도에 소재한 캠퍼스”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- “A시”가 본교와 연계한 캠퍼스 지원 필요성이 있어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“B도에 소재한 캠퍼스” 지원 가능

- (초광역권)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, 사업의 효과성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광역 과제 수립 가능 (각 지역별 계획 반영)
- (예산 지원) 자치단체 경상보조(330-01) (②~⑨ 내역사업은 출연금)
 - 각 지자체는 시도별 국비 지원규모 대비 최소 20% 이상 의무매칭
 - RIS 등 통합사업의 지역별·대학별 수주액 비율,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 배분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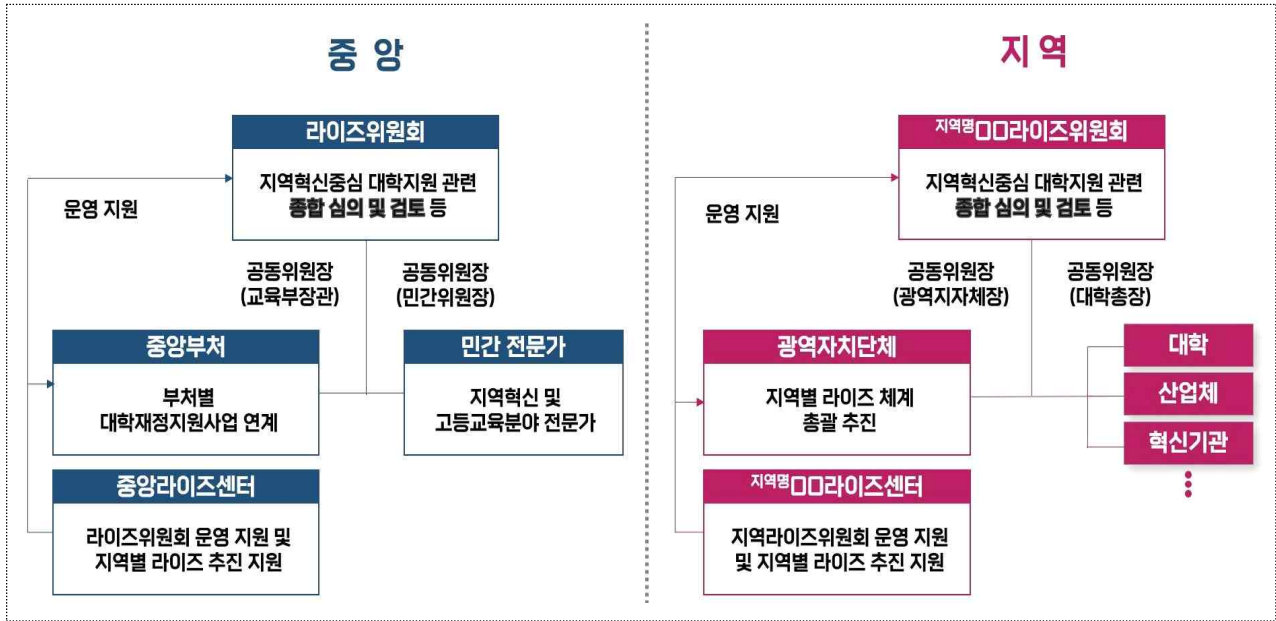
< 시도별 예산배분기준(안) >

① 대학역량 기반	②지역역량 기반
지출 재구조화 대상 사업 참여 대학 수주율 + 글로컬대학 지원액	▶ 의대·늘봄 지원 ▶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·운영 우수 지자체 ▶ 시도 매칭률 및 시범지역 성과

< '25년 RISE 정부 예산안 구성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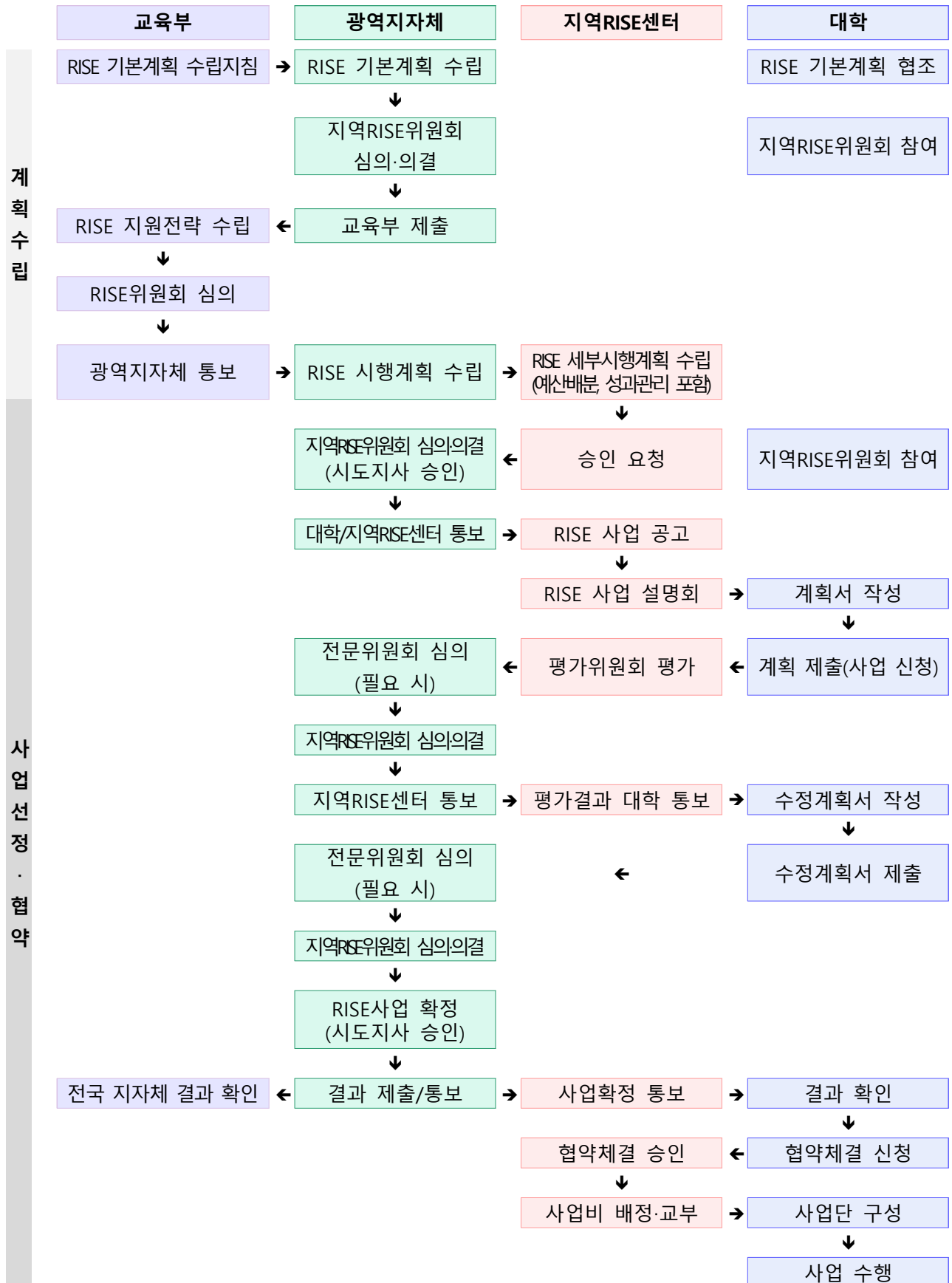
사업명		예산 (억원, '24.)	정부안 예산(억원, '25.)
세부사업 :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		12,025	20,010
내역 사업	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	12,025	17,047
	②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	2,010	2,010
	③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	258	258
	④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	96	96
	⑤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	210	210
	⑥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	140	140
	⑦마이스터대 지원	151	47
	⑧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(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)	142	142
	⑨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	60	60

2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구성



구분	기관	기능 및 역할
지역	지역RISE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RISE 전반(체계·계획·사업 등)에 관한 심의·의결 지역 RISE센터 지정·취소 심의 등
	광역지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ISE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·단위과제 구성 지역RISE센터 운영 지원 및 제도 정비 지역라이즈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시도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성과관리 총괄
	지역 RISE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도 RISE 계획 수립 지원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관리(공모, 지정) 대학에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·집행 관리, 성과관리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, 지역RISE위원회 운영지원
	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제안 RISE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수행 산업체, 혁신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
중앙	RISE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앙단위 RISE 전반(체계·계획·사업 등)에 관한 심의·의결 중앙 RISE센터 지정·취소 심의 등
	교육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ISE 지원전략 수립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도별 예산배분 시도 성과관리·모니터링 등 총괄 규제특례 사항 검토
	중앙 RISE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광역지자체 및 지역 RISE센터 교육 시도 RISE 성과관리 및 평가, 사업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교육, 워크숍, 컨설팅 등 지원, 라이즈위원회 운영 지원

3 사업 수행 절차 (순서도)



④ **사업 운영 세부사항** ※ 예산 교부, 사업비 집행·관리 등은 「보조금법」 기반 진행

① 사업의 위탁

- 시·도 지사는 지역 RISE센터에 RISE 사업예산과 사업관리 예산을 교부하고, 지역RISE센터에 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
- 지역RISE센터는 시·도가 수립한 RISE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RISE위원회가 심의·의결

② 예산 교부 방식

-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 및 중앙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지자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(330-01) 방식으로 지원
- ※ 경상보조 목에서 벗어나는 항목은 지출 불가(사업비 편성 항목 참고)

교육부	
RISE 지원전략 수립, 보조금 집행 총괄 관리 시도 대상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등 사업비교부 ↓ ↑ 결과보고	중앙관서
지자체	
사업계획 수립, 자체 성과평가 실시 등 사업비교부 ↓ ↑ 결과보고	보조사업자
지역 RISE센터	
사업비관리, 사업 공고,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사업비교부 ↓ ↑ 결과보고	간접보조사업자
대학	
사업수행	간접보조사업자

③ 사업비 편성·관리·집행

- 각 지자체는 직접적 지방비 투입 이외에도 기타 간접 지원금도 최대한 확보하여, 대학 재정지원 규모 증가 효과 창출 도모
- * RISE 예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타부처의 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,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금 등 지자체가 직접투자하는 지방비 이외 확보할 수 있는 자금
-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회계 또는 대학회계 중 자율적으로 편성하되, 각 대학 총장이 RISE 사업비를 총괄 관리

○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활용

<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별표 2 : 사업비 편성 항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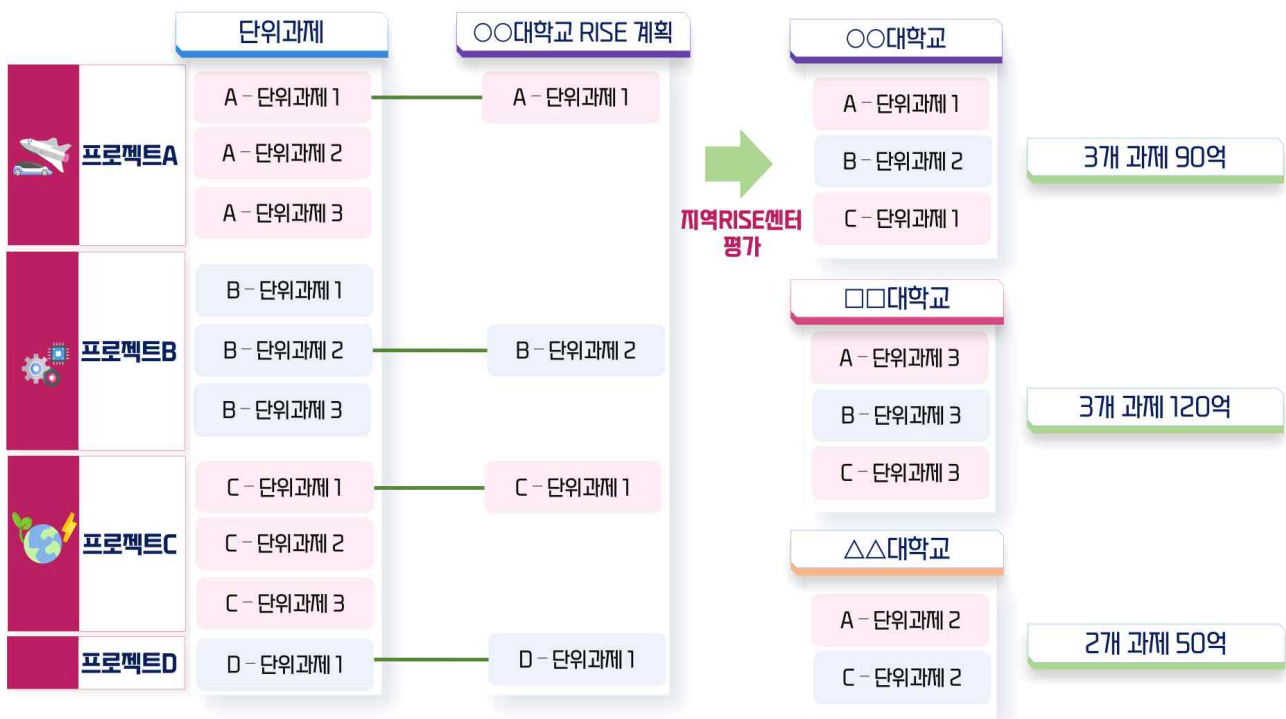
항목	사용용도
인건비	1)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등 인력의 인건비 비용(퇴직금, 4대 보험료 포함) 2) 그 밖에 RISE사업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
장학금	1) RISE사업 관련 전문학사학위과정·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) RISE사업 관련 석사·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) RISE사업 관련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
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	1)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비: 전공·비전공·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, 신규 교재개발,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)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비: 정책연구비, 강의로, 원고료, 교육학술활동비, 실험실습비 등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) 국제화 경비: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,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·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
교육·연구 환경개선비	1) 강의실·실험실·실습실 등 RISE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·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)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RISE사업에 부합하는 교육·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
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	교육·연구·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·실습·시험·분석·계측·생산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·리스·임차·유지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
지역 연계·협업 지원비	1) 지역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,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·운영, 기관 간 연계·협업 활동 등 지자체 또는 지역 내(간) 기관과의 연계·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2)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
기업 지원·협력 활동비	1) 산학공동 기술·지식 개발비: 산학 공동 기술·지식 개발 비용 2) 산학협력활동비: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, 재직자 교육, 융·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·지역·협력기관 지원 비용,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·포럼 추진·참가비 또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
성과 활용·확산 지원비	1) 기술이전·사업화 비용: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, 산학공동 기술·지식 사업화 비용(시제품 제작 및 검증 등)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비, 사업화 분석 및 투자 유치 등 기술이전 비용, 대학·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·복합 프로그램 추진비, 학생 기술·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2) 산학협력 체제 확산비: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, 세미나·포럼 개최비,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산학협력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,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 공유·확산을 위한 경비 등 산학협력 체제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	여비, 교육활동지원비, 도서 구입비, 일반수용비, 홍보비,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,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RISE사업 관련 교육·연구·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
간접비	교육연구단, 산학협력단 등 RISE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

※ RISE 사업비는 대학 내에서 사업과 관계 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사업 불가하며, 인건비·간접비 등 최대 사용가능 비율 등은 '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'으로 추후 안내

- 지역 RISE센터는 대학이 수주한 단위과제 예산의 총액을 대학에 교부하고, 대학은 단위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 활용
- 대학은 지역의 RISE 계획에서 제시된 단위과제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자율성과지표는 달성 필요
- ※ 대학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지역RISE센터에 보고

5 사업수행 대학 선정

< 사업 수행 대학 선정 구조도(안) >



- (원칙) 지역 RISE센터는 단위과제별 공모가 아닌 '00시/도 RISE 사업' 이라는 단일사업, 패키지 형태로 공모
- 각 지역은 프로젝트·과제 특성 및 지역 여건, 학교수 등을 고려해 단독형, 기업·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등 설계 가능
- ※ 지역 판단에 따라 대학별 신청 가능한 과제 수 제한 가능(통합 예정 대학은 '24년 9월 기준으로 산정)
- 사업 목적·내용 및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공모가 어려운 경우는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으로 추진 가능
- ※ 지정 추진 과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추진할 것을 권장

- 대학이 신청한 과제를 기초로 평가·선정이 이루어지므로 **공모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는 단위과제가 없도록** 공모 방안 설계 권장
 - ※ 누락된 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재공모 또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누락된 단위과제의 내용 변경, 삭제 등 RISE기본계획 변경 가능
 - **(대학의 신청)** 지역별 전체 단위과제 중 대학이 추진할 단위과제들을 패키지로 선택하여 '00대학 RISE 계획'라는 **단일 신청서** 제출
 -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**특성화 분야**에 맞게 **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들**을 선택하여 신청
 - **(선정절차)** 지역RISE센터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**평가위원회를 구성**, 평가위원회는 대학별 신청서 평가 실시
 -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지역RISE위원회에 상정하고, 지역RISE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**평가 결과 심의·의결**
 - 평가과정에서 **정치적 중립, 공정성** 등을 유지하고, **전문성** 있는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
 - 지역RISE센터는 평가위원 구성 시, **위원의 절반 이상을 중앙 RISE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**의 활용 필수
 - RISE로 통합되는 **5대 대학재정지원사업**에 대한 **평가 결과**(종합평가, 연차평가 등)를 **대학 공모 심사 시 반영*** 권장
- * RIS·LINC 등 RISE 통합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RISE의 성과목표와 연결되고,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과제에 대한 대학의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

<선정절차도(안)>



※ 공모·선정절차별 상세 내용은 선정평가 매뉴얼을 통해 별도 안내

4

성과 관리

1 성과관리 구조

◆ **지자체의 자체평가**(지자체→대학)를 기본으로 하고, **교육부는 연차점검 및 중간·종합평가**를 통해 지역별 성과 점검 및 환류(예산·컨설팅) 실시

< RISE 성과관리체계도 >

평가흐름	분류	사업수행 연도					평가 내용	평가 방식
		1년	2년	3년	4년	5년		
자체 평가 지자체 (지역RISE센터) → 대학	자체 평가	○	○	○	○	○	· (목적) 대학별 단위과제 진행상황 점검 · (지표) 자율성과지표	자율
시·도 대상 점검·평가	연차 점검	○		○	○		· (목적)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· (지표)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추진 적절성	정량 + 정성
교육부 → 지자체	중간·종합 평가		중간			종합	· (목적) 지역별 성과 점검 · (지표)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핵심성과지표 성장률, 지역별 RISE 추진과정	

*각 평가는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실시(예: 중간평가는 2차년도 종료 후 실시)

- **(자체평가)** 지역에서 설정한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지역 및 대학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및 환류
 - **(평가 주체)** 평가의 공정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RISE센터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*하여 평가
 - *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은 중앙RISE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를 활용
 - **(방법)** 지역별 평가 계획에 따라 연차평가 외 중간·종합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방법(정성·정량), 환류 방안(예산 배분 등) 등을 결정하여 추진
 - **(지표)** 지역에서 자체 설정한 자율성과지표
 - **(시기)** 매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

※ 평가 일정(매년) : 사업 종료(2월) → 성과평가 실시(3~5월) → 상위 점검·평가(6~8월)

- (시도 점검·평가) 지역별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RISE 진행상황을 점검하고, 교육부에서 제시한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지역별 성과 확인
- (평가 주체) 교육부(중앙RISE센터)는 지역·대학 전문가로 별도의 점검·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
- (방법) 연차점검은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, 중간·종합평가 시에는 서면·대면평가 병행,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배분 등 환류
 - ※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배분 방식은 별도 계획을 통해 안내하되,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정도는 연차점검 < 중간평가 < 종합평가 순으로 증가
- (지표)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와 자체평가 적절성을 매년 점검하되 중간·종합평가지에는 핵심성과지표 및 RISE 추진과정 평가도 실시

< 평가지표 구성(안) >

지표 분류	지표명	
핵심 성과지표(안)	①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	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
	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	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
	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	⑥ 대학의 지역 경제 영향력 증가율
RISE 추진과정 평가항목(안)	① 예산 확보·집행 등 사업 운영, 성과관리의 적절성	
	② 거버넌스 구축·운영의 적절성	

- (시기) 매년* 지역별 자체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시

※ 평가 일정 : 사업 종료(2월) → 자체평가 실시(3~5월) → 연차점검 실시(6~8월)

* 단,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2년차, 5년차 연차점검은 중간·종합평가에 통합하여 실시

< 연차·중간·종합평가 시기 >

연차	사업기간	연차점검	중간·종합평가	환류 방안
1차년도	'25.3월 ~ '26.2월	(연차)'26.6~8월	-	차년도 예산반영
2차년도	'26.3월 ~ '27.2월	중간평가에 통합	(중간) '27.6~8월	차년도 예산반영
3차년도	'27.3월 ~ '28.2월	(연차)'28.6~8월	-	차년도 예산반영
4차년도	'28.3월 ~ '29.2월	(연차)'29.6~8월	-	차년도 예산반영
5차년도	'29.3월 ~ '30.2월	종합평가에 통합	(종합) '29.12월	2주기 RISE 반영

② 성과지표(핵심·자율) 구성

◆ **지역**은 지역RISE의 성과관리를 위한 **자율성과지표**를 설정하고, **교육부**는 지역의 중장기 성과를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공통의 **핵심성과지표**를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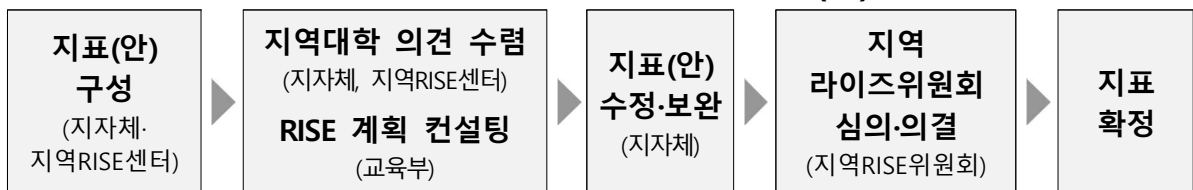
- **(자율성과지표)**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관리하는 성과지표로 지역RISE의 비전·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가 자체 개발한 지표 활용
 - **(구성)** 단위과제의 성과 측정을 위해, 사업 수행과정, 사업결과 및 효과에 대해 자체 점검(모니터링, 평가)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

< RISE 자율 성과지표 구성(예시) >

	프로젝트	단위과제	자율성과지표
A 지역 RISE 계획	프로젝트 '가'	과제 1	창업교과 이수학생 비율
			대학생 창업 건수
	과제 2	대학창업기업 판로 지원액	
		대학생 창업 건수	
...	

- **(선정절차)**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시, 시도와 대학이 함께 지표를 마련하고,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·의결로 **자율성과지표** 확정
 - ※ 대학 측의 평가 부담 완화 및 평가 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급적 대학 정보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

< RISE 자율 성과지표 선정 절차(안) >



※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성과지표·목표를 변경하는 경우, 지역RISE위원회 심의·의결 필요

- **(지표 선정기준)** 사업의 우선순위, 내용을 고려하되, **궁극적으로 발전시킬 지역의 고등교육 분야의 지표**를 선택하며 **지표별 지역 내 과거 추세치·전년도 실적·국정과제** 등을 고려한 발전된 목표치 설정
 - ※ 기준값은 전년도 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 등 합리성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매년 증가(우상향)하는 수치로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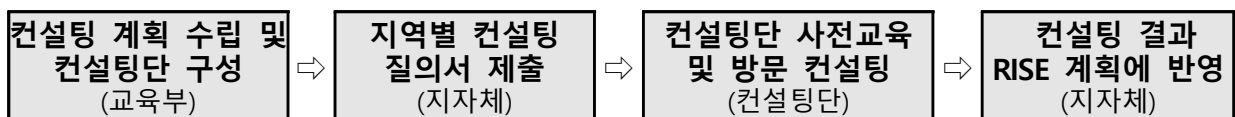
- **(핵심성과지표)**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의·산식에 따라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RISE 취지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

핵심성과지표 구성(안)
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
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
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
④ 지역 정주 취업 증가율
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
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(IMPACT 평가)

- (구성)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표과제의 성과지표(①)와, RISE의 비전·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지역 공통의 결과지표(②~⑥)로 구성
- (평가방법) 각 지역별 교육·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통 지표(②~⑥)는 기준연도 대비 증가율, 대표과제지표(①)는 달성률 평가
- (평가활용) 핵심성과지표는 중간·종합평가시에만 평가지표로 활용
※ ④~⑥ 핵심성과지표는 종합평가시에만 활용
- **(RISE 추진과정 평가)** 중간·종합평가 시 지자체-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예산 확보·집행 등 추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

3 지역 RISE 계획 컨설팅

- **(추진 목적)** 시도별 점검·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RISE 계획 및 시행체계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실시(필요시)
- **(추진 시기)** : 상위 점검·평가(연차·중간·종합) 결과 안내 후 9~12월 중
- **(추진 절차)** : ① 컨설팅단 구성 → ② 지역별 컨설팅 질의서 제출 → ③ 컨설팅단 사전 회의 → ④ 지역별 방문 컨설팅



- **(컨설팅 내용)** RISE 추진목표 및 프로젝트별 중점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·자문

IV. 향후 추진 일정(안)

- 지역별 RISE기본계획 완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진행 (~'24.12.)

- 지역별 RISE 기본계획 완성 ('24.12.)

- 지역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(~'25.2.)

- 지역별 RISE 수행대학 공모 및 사업 추진 ('25.1분기.~)